



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

1 디지털 전파·방송통신 재난 위기 대응

-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
- 방송통신설비 안전점검 및 기술기준 적합조사
- 전파감시, 전파교란 대응
- 전파혼신처리 및 중요통신망 보호
- 전파차단장치 제조·수입 등 인가 및 사용신고
- 국내·외 위성전파감시 및 국내 위성망 보호 활동
- 불법무선국 조사·단속
- 무선국 기술기준 및 허가사항 위반 조사·단속

2 전파·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

-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·단속
- 불법감청설비 조사·단속 및 탐지업 등록·관리
-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관리·감독
- 무선국 전자파 관리
- TV방송 수신장애 조사
-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 지정·신고
-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위반행위 사실조사
-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 기준 준수 조사
-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실태검사

3 편리한 전파·방송통신 행정서비스

- 무선국 허가·검사, 방송국 검사
- 공중케이블 점검
- 방송통신사업 등록·관리
-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
- 유료방송사업자 허가 조건 이행 점검
- 전파사용료 부과·징수
- 전기통신설비 제공 이행실태 관리
- 전파환경 수탁 측정 및 누설전자파 조사
- 정보통신방송분야 비영리법인 허가·감독

4 국제협력 및 전파교육

-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국제 표준화 활동
-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
- 어린이 전파교실



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,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

중앙전파관리소

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,
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.
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
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
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


인터넷 전자민원 emsit.go.kr

민원상담 080-700-0074 / 02-3400-2000



| 기관명 | 주소 | 전화번호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앙전파관리소 | (05830)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| 02-3400-2000 |
| 위성전파감시센터 | (17413)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 | 031-644-5900 |
| 서울전파관리소 - 서울북부사무소 | (08249)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-43 (11604)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 | 02-2680-1700 031-849-5800 |
| 부산전파관리소 | (46703)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 | 051-974-5100 |
| 광주전파관리소 | (58214)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 | 061-330-6800 |
| 강릉전파관리소 | (25428)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-31 | 033-660-2980 |
| 대전전파관리소 - 당진사무소 | (35283)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(31754)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| 042-520-4100 041-360-2800 |
| 대구전파관리소 | (42043)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| 053-749-2800 |
| 전주전파관리소 | (55316)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| 063-260-0070 |
| 제주전파관리소 | (63037) 제주시 애월읍 도치들길 385 | 064-740-2800 |
| 청주전파관리소 | (28567)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 | 043-261-5811 |
| 울산전파관리소 | (45013)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 | 052-231-8810 |



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,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

방송통신기자재 안전한 제품을 사용합시다!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중앙전파관리소

방송통신기자재란?

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
장치·기기·부품 등을 말하며,
유선, 무선 및 정보기기 등이 해당됩니다.
※'방송통신기기' 또는 '정보통신기기' 라고도 함

방송통신기자재는 정부의
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

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란?

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
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
보증하는 제도입니다.

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·제조·수입 등을
하기 위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고,
제품에 인증표시를 부착한 후
유통하여야 합니다.



중앙전파관리소 민원센터

☎ 080-700-0074(무료)

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?

- 전파의 혼·간섭을 줄 수 있는 휴대폰, 무선랜, 무선조정기 등 무선기기
- 방송통신망에 접속하는 전화기, 모뎀, 팩시밀리, 셋톱박스 등 유선기기
- 컴퓨터, 프린터, 모니터, 디지털카메라, USB, MP3, 차량용 블랙박스 등 정보기기
- 텔레비전수상기, 전기청소기, 전기밥솥, 조명기구 등 전기용품

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은?

제품에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
확인하시면 됩니다.

※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에는 제품 내용에
인증정보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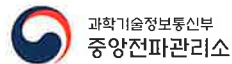
인증마크



2010년까지



2011년부터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중앙전파관리소

홈페이지: crms.go.kr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: emsit.go.kr
전파·방송통신민원: 080-700-0074



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?

- ☞ 불량 제품과 달리 안전합니다.
- ☞ 화재, 감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☞ 전자파 영향에 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.
- ☞ 주변기기에 간섭 및 오작동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.

KC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을 발견하면?

중앙전파관리소 또는 지방전파관리소에
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
제조·수입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면
전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

해외직구한 제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한가요?

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은
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,
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되어
판매할 수 있습니다.

※ 제품별(모델) 1인 1대만 가능합니다.

다만, 「관세법」 등 타법에 대해서는
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.